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291 호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서울특별시 중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보급사업 개요]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 ❖ 설비 규모: 50W ~ 1kW 미만 소형 발전소
- ❖ 신청 자격: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 설치 장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 ❖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
-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 ❖ (거치형) 베란다 난간에 설치, (앵커형)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

1.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공동 주택 (베란다), 단독 주택 (옥상), 상가 건물 등에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를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여 자가용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주민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2. 사업 규모: 설치 개소 당 5만원 지원(선착순 180개소)

3. 지원 기간 : 2019.4. ~ 2019.11.29.

- 보조금은 선착순 지원하며, 예산 소진 하는 경우 사업 종료함

4. 지원 기준

[거 치 형]

-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거치 형태로 설치하는 거치형은 발전 설비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모듈) 규격(품질)로 제한합니다.

① 보급 제품 (KS 인증 제품) 규격 제한 (모듈 1장 기준)

제품(모듈) 규격	가로 길이(mm) 제한	무게(kg) 제한	효율(%) 제한
허용 범위	1,700mm 이하	20kg 이하	18% 이상

※ 2018년 이전 1장 설치 후 2019년 1장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없음

《 130W 이하 소형 (저용량) 모듈 》

- ❖ 130W 이하 소형 제품은 효율 기준 적용을 1년간 유예 (2020년부터 효율18% 이상 적용) 하고 총 합산 무게 20kg 이하 내에서 지원하고 가로 길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앵 커 형 (고정형)]

-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형태로 설치하는 앵커형도 거치형과 동일하게 보급제품의 규격은 「길이 1.7m 이하, 무게 20kg 이하, 효율 18%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5. 지원 절차

- (주민) 설치 신청 ⇨ (보급업체) 설치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① (주민) 신청 방법 (택1)

-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 4월말 이후
-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 태양광 지원센터 전화 신청(☎ 739-7061~5)

② (보급업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 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적절한 경우 신청인과 보급업체 간 설치계약서 작성 및 설치

③ (서울특별시중구청) 보조금 지급

-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거서류 등을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로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 서울특별시중구청 환경과): 매월 초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증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출

6. 보급업체 : 총 51개 업체(붙임 1 참조)

- 2019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변경공고 [서울에너지공사 공고, 2019.4.5.]에 의하며, 이후 보급업체 및 제품 추가·변경 시 서울특별시 추가 공고에 따름

7.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별지1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및 기타 붙임 서류

※ 기타 붙임 서류: ① 설치계약서, ② 설치확인서, ③ 사전점검표, ④ 현장점검표,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⑥ 태양광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⑦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⑧ 자부담금 증빙자료 (영수증 사본 등) ⑨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이력 미포함 발급)

8. 지급 방법

- 신청인(주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주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가 수령

9. 유의사항

- 지원규모는 예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급업체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배란다 난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신청인(설치 시민)과 보급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중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보급업체와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서울특별시중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2호 서식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 및 이전 설치’ 참조)
 - 이 경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급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전 설비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기타사항

- 시공기준, 사후관리, 기타 의무사항은 아래 서울특별시 공고문에 따릅니다.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517호(2019.2.20.) : 2019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호(2019.3..) : 2019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02-3396-5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서류 포함) 1부.
2.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중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 각 1부.

- 붙임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1부. 끝.